

## 위원회 설치규정(4-4-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행정의 전반 또는 부분적인 중요사항을 예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 또는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각위원회는 당연직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의 임명 또는 호선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3조(절차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부서의 장이 사전에 위원회 명칭, 설치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규정 및 운영) 제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제 규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제5조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9조(사무) 각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